

청약 신청자격 확인

구분	내용	
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에 거주(장기복무군인제외)중 이신가요?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거나 무주택세대주(노부모부양, 생애최초)이신가요? - 과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청약 제한이 있으신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된 사실이 있는 분 또는 그 세대의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24개월 경과 및 연체없이 24회차 이상 납입하셨나요?
	2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무주택 세대 요건	1순위	-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요건에 해당되는 분
	2순위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 해당되는 분
자산 및 소득 요건	- 해당 없음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 없이 전산 관리지정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동별·층별·항별·축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인천광역시,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 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4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 시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 그 외 수도권)→ ③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입주지정 기간 초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표1>”	기준일	지역 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1.09.03)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기타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